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1. 19 선고 2024가단5123899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피고B

변론 종결 2024. 10. 22.

판결 선고 2024. 11. 1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221,042,686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1. 25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가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

인정된다.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221,042,686원(2024. 1. 24. 기준 잔여 원금, 원고는 일부 변제금을 피고에게 유리하게 원금에 충당하였다) 및 이에 대하여 2024. 1. 25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, 이 사건 채무상환연대보증서(별지로 첨부)는 원고가 형식적인 것이라며 작성을 요구해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.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, 위 사실관계와 같은 피고의 연대보증 사실이 인정된다.

2. 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.

판사유창훈

별지